

행정 명령

사법 심사 위원회 (JUDICIAL SCREENING COMMITTEES) 설립

헌법 및 뉴욕주 법에 의해 주지사는 이와 같은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청구법원의 판사 및 부장판사 직위에 사법관 지명; 대법원의 법관, 임시법관, 및 대법원 항소법원의 부장판사 임명; 그리고 대법원 법관, 카운티법원 판사, 대리법원 판사 및 뉴욕시 외부의 가정법원 판사직의 공석에 지명; 그리고

공정하고 공평하며, 독립적이고, 높은 자격을 갖춘, 다양한 사법부는 뉴욕주 법원을 이용하는 모든 이들에게 정의를 보장하고, 사법 처리의 청렴함에 대한 공공 신뢰를 조성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므로; 그리고

공정하고 공평하며, 독립적이고 높은 자격을 갖춘, 다양한 사법부는 다음과 같이 구축되므로:

1. 뉴욕주 전체로부터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높은 자격을 갖춘 후보자들에게 사법부에 지원할 것을 장려;
2. 정치적 신념 또는 연계 정당과 상관없이 사법관 후보 검토; 그리고
3. 정직성, 독립성, 지적능력, 판단력, 기질, 및 경험에 근거하고, 뉴욕주 주민의 다양한 배경 및 경험을 가진 사법관 선택; 그리고

가장 높은 자격으로 사법부에 임명된 자들은 다양하고, 신뢰할만하고, 공평하며, 당파에 소속되지 않은 사법 심사 위원회의 도움을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이제, 그러므로, 나, Andrew M. Cuomo 뉴욕 주지사는, 헌법 및 뉴욕주 법에 따라 내게 확립된 권한에 의해, 다음의 사항을 명령합니다:

A. 목적 및 의무

1. 사법 심사 위원회는 이로써 뉴욕주 전체에 사법관으로 지정 또는 임명될 후보의 자격을 평가하고, 사법관 직위를 받을 자격이 되는 이들을 주지사에게 추천하기 위해 설립됩니다.

2. 각 사법 심사 위원회는 다음의 일을 합니다:

- a. 위원회의 관할권 내에서 사법관으로 지정 또는 임명될 후보를 적극적으로 모집합니다. 후보 모집에 있어, 사법 심사 위원회는 뉴욕주의 다양한 배경 및 경험이 있는 주민들을 반영할 후보 선출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b. 지정 또는 임명될 모든 후보의 자격조건을 검토하고 평가합니다. 후보 자격조건 검토 및 평가에 있어, 각 위원회원은, 각 후보의 정직성, 독립성, 지적능력, 판단력, 기질 및 경험에 대한 일차적 고려를 하되, 후보의 연령, 신념, 피부색, 출신국가, 성적기호, 군대신분, 성별, 장애, 유전적 특성, 결혼상태 또는 정치적 연계당 등은 고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 c. 모든 위원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 결정된, 검토되고 있는 사법관 직위에 맞는 높은 자격을 갖춘 후보를 지정 또는 임명합니다. 어떤 위원회라도 위원회 및 직원이 철두철미한 조사를 다 마칠때까지 후보의 자격조건을 전달해서는 안됩니다;
- d. 충분한 자격이 되어 주지사에게 추천할만한 각 후보의 자격조건에 대해 서면의 보고서를 준비합니다. 의위원회 보고서는 요청시 일반에 공개가 가능합니다. 후보에 관한 사법 조사 위원회의 그 외의 모든 기록, 심의, 및 위원회와의 통신 내용은 비공개로 보관되며, 주지사, 주지사 자문, 또는 그들이 지명하는 이를 제외하고는 공개되서는 안됩니다. 앞서 언급된 것에도 불구하고, 지정자와 관련되어 사법 조사 위원회에 제출된 정보는 지정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상원에 공개될 수 있으며, 사법 심사 위원회에 제출된 정보는 법으로 요구되거나, 징계조치와 연결되어 개인이나 단체에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공개될 수 있습니다.

B. 주 사법 심사 위원회 (State Judicial Screening Committee)

1. 주 사법 심사 위원회는 이로써 설립되었습니다.

2. 주 사법 조사 위원회는 열 세 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주지사가 선출하는 두 명; 이 행정 명령 섹션 C로 인해 설립된 부서별 사법 조사 위원회 각 대표인; 각 사법 조사 위원회 부서에서 주지사가 선출하는 추가 한 명씩; 항소법원의 수석판사가 선출하는 두 명; 그리고 법무장관이 선출하는 한 명. 주 사법 심사 위원회 의장은 위원회원 중에서 주지사가 지명할 것입니다.

3. 심사 위원회 부서의 일원이자 주 사법 심사 위원회원의 재직 기간은 심사 위원회 부서에서의 재직 기간이 만료될 때와 동시에 만료될 것입니다.

4. 주 사법 심사 위원회는 청구재판소의 판사직 및 부장판사직에 지정할 후보의 자격조건을 고려할 관할권을 가질 것이며 사법관 직위를 받을 높은 자격이 되는 이들을 주지사에게 추천할 것입니다.

5. 청구법원 법안 섹션 2(6)에 따라 청구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할 권력을 행사할 때; 또는 헌법 VI조의 섹션 9 및 청구재판소 법안 섹션 2(2)와 2(4)에 따라 청구재판소 판사를 지정할 권력을 행사할 때; 또는 헌법 VI조의 섹션 21(b)에 따라 청구재판소 판사직의 공석을 채우는 권력을 행사할 때, 주지사는 주 사법 심사 위원회가 지정 또는 임명될 사법관의 높은 자격조건을 갖추었다고 추천한 사람만을 지정할 것입니다.

6. 주 사법 심사 위원회는 소송절차 및 이 명령에 의해 설립된 부서별 및 카운티 사법 심사 위원회의 업무를 조절할 적절한 규칙 및 규정을 공포해야 합니다. 규칙 및 규정은 뉴욕주 전체의 사법부에 지정 또는 임명될 후보의 자격조건을 평가하는 기준의 균일성을 보장할 기준과 절차를 포함해야 합니다.

C. 부서별 사법 심사 위원회 (Departmental Judicial Screening Committees)

1. 부서별 사법 심사 위원회는 이로써 뉴욕주의 각 사법부서에 설립되었습니다.

2. 각 부서별 사법 심사 위원회는 열 세 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주지사가 선출하는 다섯 명; 항소법원의 수석판사가 선출하는 두 명; 법무장관이 선출하는 두 명; 그 부서의 항소법원의 부장판사가 선출하는 한 명; 국회의장 및 상원 소수당 대표인이 함께 선출하는 한 명; 상원의 Pro Tempore 회장 및 의회 소수당 대표인이 함께 선출하는 한 명; 그리고 뉴욕주 변호사 협회장이 선출하는 한 명. 각 부서별 사법 심사 위원회 회장은 위원회원 중에서 주지사가 지명할 것입니다. 위원회의 각 구성원은 그가 재임하게 될 사법부 내의 거주인이야 하며, 사법부 안에 사무실이 있거나, 또는 일하고 있어야 합니다.

3. 각 부서별 사법 심사 위원회는 부서의 대법원 항소법원의 사법관, 추가의 사법관 및 부장판사에 임명될 후보와, 그 부서의 대법원 판사에 지명될 후보의 자격조건을 고려하고, 이와같은 사법관의 높은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모든 사람을 주지사에게 추천할 관할 구역이 있어야 합니다.

4. 헌법 VI조항의 섹션 4(c)에 따라 각 항소법원의 부장판사를 임명하는 권한을 행사할 때; 또는 헌법 VI조항의 섹션 4(c)에 따라 어느 항소법원에 다른 사법관을 임명하는 권한을 행사할 때; 또는 헌법 VI조항의 섹션 4(e)에 따라 어느 항소법원에 추가의 사법관을 임명하는 권한을 행사할 때; 또는 헌법 VI조항의 섹션 21(a)에 따라 대법원 사법관의 공석을 채우는 권한을 행사할 때, 주지사는 부서별 사법 심사 위원회에서 지정될 사법관의 높은 자격조건이 갖추어졌다고 추천한 사람만을 지정 또는 임명할 것입니다.

5. 부서별 사법 심사 위원회에서 추천한 대법원 사법관이나 법관 또는 추가의 항소법원 법관 후보자는 사법부의 그러한 직위를 위해 주지사에게 지정 및 임명받을 자격이 됩니다. 앞서 언급된 것에도 불구하고, 부서별 사법 심사 위원회의 추천 없이, 대법원 항소법원의 법관으로 재임하고 있는 사람이 주지사에게 의해 추가의 법관으로 임명될 수도 있으며, 또한 대법원 항소법원의 추가법관으로 재임하고 있는 사람이 주지사에게 의해 동일하거나 다른 사법부의 법관으로 임명될 수도 있습니다.

D. 카운티 사법 심사 위원회 (County Judicial Screening Committees)

1. 이로써 주의 각 카운티에 카운티 사법 심사 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이는 그 카운티가 위치한 부서의 부서별 사법 심사 위원회들로 구성되며, 그 외에 카운티 거주인이거나 카운티에서 일하고 있는 한 명을 카운티 행정책임자가 선택하여 추가합니다. 카운티 사법 심사 위원회 회장은 부서별 사법 심사 위원회 회장이 될 것입니다. 이로써 여기에서 사용된 대로, 카운티의 “행정 책임자”는 지명된 또는 선거된 카운티 행정관을 뜻하며, 만약 그러한 직위가 없는 경우, 카운티의 관리기관 책임자를 뜻합니다; 그러나 뉴욕시 내의 카운티에서 “행정 책임자”는 뉴욕시 시장을 뜻합니다.

2. 각 카운티 사법 심사 위원회는 카운티 법원 판사, 대리법원 판사, 및 뉴욕시 외부의 가정법원 판사에 임명될 후보의 자격조건을 고려하고, 또한 그러한 카운티의 사법관직을 위해 높은 자격을 갖춘 모든 사람을 주지사에게 추천할 관할 구역이 있어야 합니다. 헌법 VI 조항 섹션 21(a)에 따라, 카운티 법원 판사, 대리법원 판사 또는 뉴욕시 외부의 가정법원 판사의 공석을 채우기 위한 지정 권한을 행사할 때, 주지사는 해당되는 카운티 사법 심사 위원회에서 지정될 사법관의 높은 자격조건이 갖추어졌다고 추천한 사람만을 지정할 것입니다.

E. 일반 규정

1. 이 행정 명령에 의해 설립된 사법 심사 위원회 일원의 재임기간은 3년 단임입니다.

2. 이 행정 명령에 의해 설립된 사법 심사 위원회 일원의 재임기간은 공무원법 섹션 5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위원회 공석은 초기 지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채워지며, 공석을 채우도록 지정된 사람은 만기되지 않은 나머지 기간동안 재임하게 됩니다. 특정 이유없이 어떤 구성원도 주지사에게 의해 재임중 해임되지 않습니다.

4. 어떤 사법 심사 위원도 재임중 보상을 받는 사법적 및 선출된 공직을 맡을 수 없으며, 아무 정당의 직분도 맡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법 심사 위원도 자신의 재임동안 또는 그 이후 1년동안, 자신이 재임하고 있는 사법 심사 위원회의 관할구 내에서 아무 사법관 직위의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사법 심사 위원들은 그 일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으나, 단 의무 수행과 관련되어 필요한 지출에 대해서는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각 사법 심사 위원에게는 유급직원이 있어 위원이 모든 사법관 지정을 위한 후보 자격조건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합당한 조사를 포함하여 그 책임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6. 2008년 6월 18일에 발행된 행정 명령 No. 8은 이로써 이 행정 명령 발행일로부터 폐지되고 취소됩니다.

이천십일년 사월 이십칠일 Albany시에서 내게

주어진 권한 및 주 인장의 권한에

의함.

주지사

주지사 비서실장